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11
----------	------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주용태)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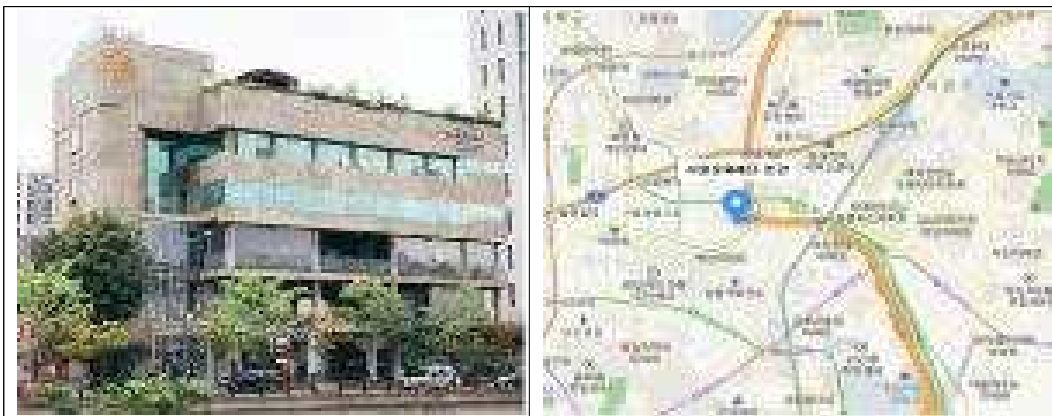
## 나. 주요내용

### (1) 사업개요

- 사 무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소요예산 : 683억 5천7백만원(68,357,374천원)

### (2)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규 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 전경 및 위치도



##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창작 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16.3%(95억 9천5백만원) 증가한 683억 5천7백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됨.

최근 5년 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금 규모	43,277	42,026	50,057	57,406	58,763
전년대비 증감액	29,451	-1,251	8,031	7,349	1,357
전년대비 증감률	213.0%	-2.9%	19.1%	14.7%	2.4%

-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써 고사위기의 예술계가 지속적으로 공존할 제도적 기반과 정책을 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시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연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 출연규모의 적정성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전년 대비 16.3%인 95억 9천5백만이 증액된 683억 5천7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출연금	55,762,649	58,762,649	68,357,374	9,594,725	16.3%

-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일상 속 문화놀이터 자치구 콘텐츠 지원’,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 ‘동북권역 예술교육센터 개관 및 운영’ 3개 사업임.

#### 〈 2022년 신규사업 〉

(단위: 천원)

구분		'22년 예산(안)
신규 사업비 총계		2,600,000
지역문화활성화	일상 속 문화놀이터 자치구 콘텐츠 지원	1,500,000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	600,000
예술교육센터 운영	동북권역 예술교육센터 개관 및 운영	500,000

지역문화활성화 2개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민의 공유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동북권역 예술교육센터 개관 및 운영’ 5억원은 2023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강북구 미아동에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 사전준비를 위한 예산임.

- 세부사업 중 전년도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예술창작 지원’, ‘일상 속 문화놀이터 자치구 콘텐츠 지원’(신규), ‘서울연극 센터 운영’, ‘공공극장 사업운영’ 등이 있음.

〈 2022년도 서울문화재단 10억원 이상 증액 세부사업 〉

(단위: 천원)

구분		'22년 예산(안)	증액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8,950,000	1,000,000
지역문화 활성화	일상 속 문화놀이터 자치구 콘텐츠 지원(신규)	1,500,000	1,500,000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	서울연극센터	1,447,000	1,047,000

이 중 ‘서울연극센터’ 10억 4천7백만원은 내년 3월 재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인 서울연극센터의 시설 구입비를 편성한 것임.

-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 ‘서울예술축제지원’ 20억원은 서울시 사업으로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재단 간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논의 중임.

라. 2022년 주요 현안

□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처리 규정

- 재단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1억원 중 54억원은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 14억원은 내부유보금(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중 8억원을 예술청의 ‘예술인 복지기반 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제302회 임시회 보고 안건으로 제출하였음.

-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은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2022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서 서울시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내부유보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규정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 한편 2021년도 예술청 최종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천9백만원에서 예비비 8억원이 증액된 21억 6천9백만원이 되었고, 재단은 2022년도 예술청 사업에 이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함.

### 〈 2022년도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예산 편성 〉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예비비	최종예산 (A)		
예술청	1,369,000	800,000	2,169,000	2,169,000	* 0

\* '21년도 기정예산 대비 '22년도(안) 8억 증가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에는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액분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 8억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게 되고,

결국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감액 조정”이라는 예산편성기준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 2022년도 서울문화재단 지출예산(안) 〉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	22년 예산(안)	21년 예산	증감
<b>총 합 계</b>			<b>73,060,300</b>	<b>63,702,977</b>	<b>9,357,322</b>
인건비			12,939,095	12,510,830	428,264
운영경비			6,379,207	5,601,134	778,073
사업비			52,845,153	44,868,000	7,977,153
<b>예술창작 활성화</b>			<b>12,755,000</b>	<b>10,655,000</b>	<b>2,100,000</b>
	예술기획 및 기반마련		2,105,000	2,105,000	0
		예술기반지원	2,105,000	2,105,000	0
	예술창작지원		8,950,000	7,950,000	1,000,000
		예술창작지원	8,950,000	7,950,000	1,000,000
	융합예술지원		1,700,000	600,000	1,100,000
		융합예술플랫폼	700,000	400,000	300,000
		미래예술창작지원	1,000,000	200,000	800,000
<b>지역문화 및 시민문화 활성화</b>			<b>13,041,200</b>	<b>11,120,000</b>	<b>1,921,200</b>
	지역문화 활성화		5,250,000	3,080,000	2,170,000
		지역문화 진흥사업	2,750,000	2,680,000	70,000
		생활문화 인력양성 → 지역문화 인력양성	400,000	400,000	0
	(신규)	일상속 문화놀이터 자치구 콘텐츠 지원	1,500,000	0	1,500,000
	(신규)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	600,000	0	600,000
	생활문화 활성화		2,387,000	2,270,000	117,000
		생활문화 활성화	2,387,000	2,170,000	217,000
		음악분야 문화복지 활성화	0	100,000	△100,000
	예술축제 지원 및 활성화		2,504,200	3,500,000	△995,800
		서울예술축제지원	0	2,000,000	△2,000,000
		서울거리예술축제	2,004,200	1,400,000	604,200
		서울시대표 B-boy단 운영 →서울시B-boy페스티벌개최	500,000	100,000	400,000
	거리예술 활성화		2,900,000	2,270,000	630,00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900,000	2,270,000	630,000
<b>예술교육 활성화</b>			<b>6,509,000</b>	<b>5,829,000</b>	<b>680,000</b>
	서울형 예술교육 확산		2,260,000	2,260,000	0
		서울예술교육실천가양성	2,060,000	1,666,000	394,000
		서울예술교육랩	150,000	224,000	△74,000
		서울예술치유	50,000	370,000	△320,000
	지역형 예술교육 활성화		800,000	720,000	80,000
		자치구예술교육활성화지원 →자치구예술교육기반조성지원	400,000	370,000	30,000
		서울시민예술대학	400,000	350,000	50,000
	예술교육센터 운영		3,449,000	2,849,000	600,000
		서울예술교육센터	2,002,000	2,002,000	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	280,000	△280,000
		서서울예술교육센터	947,000	567,000	380,000
	(신규)	동북권역 예술교육센터 개관 및 운영	500,000	0	500,000



<b>창작공간 활성화</b>		<b>7,545,770</b>	<b>5,546,000</b>	<b>1,999,770</b>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		7,545,770	5,546,000	1,999,770
		유망예술지원	500,000	500,000	0
		문래예술공장	510,000	460,000	50,000
		금천예술공장	546,720	532,000	14,720
		신당창작아케이드	610,000	600,000	10,000
		서울연극센터	1,447,000	400,000	1,047,000
		창작연습공간	500,000	500,000	0
		서울무용센터	635,000	572,000	63,000
		서교예술실험센터	670,000	640,000	30,000
		연희문학창작촌	545,050	490,000	55,050
		잠실창작스튜디오	1,272,000	552,000	720,000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310,000	300,000	10,000
<b>문화정책 개발 및 제휴협력 추진</b>		<b>1,010,000</b>	<b>810,000</b>	<b>200,000</b>	
	문화정책 및 경영시스템 구축		370,000	300,000	70,000
		문화정책개발 및 지원	370,000	300,000	70,000
	제휴협력 추진		640,000	510,000	130,000
		서울메세나사업	640,000	510,000	130,000
<b>극장운영 활성화</b>		<b>2,541,148</b>	<b>2,052,000</b>	<b>489,148</b>	
	극장 및 공간 운영		2,541,148	2,052,000	489,148
		공공극장 무대기술 운영 및 관리	441,148	1,527,000	△1,085,852
		공공극장 사업운영	2,100,000	525,000	1,575,000
<b>문화예술협치 활성화</b>		<b>3,209,000</b>	<b>3,209,000</b>	<b>0</b>	
	예술청 운영		3,209,000	3,209,000	0
		예술청	2,169,000	2,169,000	0
		청년예술청	1,040,000	1,040,000	0
<b>경영기획 및 관리</b>		<b>6,234,035</b>	<b>5,647,000</b>	<b>587,035</b>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2,830,000	2,359,000	471,000
		네트워크 홍보강화	615,000	615,000	0
		문화예술간행물발간	265,000	265,000	0
		정보시스템 운영	750,000	450,000	300,000
		온라인정보서비스	0	300,000	△300,000
		온라인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온라인서비스통합유지보수및고도화	1,200,000	729,000	471,000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3,404,035	3,288,000	116,035
		청계천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1,116,191	1,556,000	△439,809
대학로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2,287,844	1,732,000	555,844	
<b>예비비</b>		<b>896,845</b>	<b>723,013</b>	<b>173,832</b>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질문 :

답변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711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소요예산 : 68,357,374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2) 규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이광훈 (☎ 2133-2555)